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6.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1.27.

다. 상정일자: 2022.2.10.

(제264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23. ~ 2022.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 제1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우리 구 조례 및 규칙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2021년 11월 우리구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이란 환경 · 경제 ·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2021년 7월 15일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 · 공포하여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의 시작을 알렸고 성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17개의 기본계획 수립과 5대 핵심전략 등을 기반으로 주관 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구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요 정책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서울시 내에서는 강서구, 서대문구 등을 포함한 10개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실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